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96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나.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 정비
(안 제5조)

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기금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의 연장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5조제3항에서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와 일치하도록 안 제10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으로 하여 타 기금과 통일되게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안 제2조의2제7호,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5항, 안 제6조의3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내실있는 기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신설 2016.3.29.>

제62조의14(기본지침)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제62조의16(육성계획의 조정)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제62조의18(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 제62조의20(지역협동기술향상)
-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 제62조의22(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 제62조의2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부 칙 <법률 제14111호, 2016.3.29.>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98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칙의 유효기간 연장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규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구세 경감을 지원하고자 부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부칙 안 제3조(적용시한)에서 이 조례가 2017.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규정상의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감면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구세 경감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기간의 연장 관련 규정에 의거,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공통적인 적용을 위해 감면 규정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